

2018 성평등활동가 교육지원_〈우리동네 젠더스쿨〉 교육기획 및 지원사업 공모

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마을활동, 여성주의 활동에 참여하는 모임/단체 구성원들의 젠더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.

□ 공모개요

- 사업기간 : 9월~10월
- 공모기간 : 2018년 8월 10일(금)~9월 9일(일) 24:00까지
- 공모대상 : 우리 동네에 필요한 성평등 교육을 직접 기획하고자 하는 여성플뿌리 모임 및 단체
(단, 서울시 소재)
- 공모내용 : 지금, 우리 동네에 필요한 여성주의 교육 커리큘럼 기획 및 실행

□ 지원내용

- 지원내용
 - 1) 1단체 당 최대 200만원 상당 지원 (예산항목 : 강사비, 간식비)
 - 2) 홍보포스터 디자인 파일
- 지원조건 : 서울시에서 활동 중인 여성활동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/단체

□ 지원방법

- 제출서류 : 공모사업 신청서, 세부사업계획서, 단체(모임) 소개서, 단체(모임) 회원 동의서,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각 1부.
- 접수기간 : 2018년 8월 10일(금)~9월 9일(일) 24:00까지(접수기간 이후 접수분 인정 안 됨)
- 접수처 : 이메일접수(seoulgenderequity@gmail.com) (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)
 - ※ 접수시, 제목에 [우리동네] 지원합니다, 본문내용 : 모임/단체명, 연락처를 입력 후 발송

□ 심사·선정 및 결과발표

- 1) 선정기준(평가표) : 5개 심사항목 100점

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
사전 준비 정도	▶신청 주체의 활동(사업)수행 역량	20
사업 효율성 및 타당성	▶활동(사업) 계획 및 운영성과의 내용 적합성	30
지속가능성	▶활동(사업)의 지속가능성	20
발전가능성	▶지역사회 참여 및 확산 가능성 정도 ▶활동(사업)의 효과성	20
예산타당성	▶예산편성 계획, 사용의 타당성	10

※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 선정심사 시 부정적인 영향은 없음

2) 선정방법

○ 사전 요건 심사: 사전 서류 심사 후 내용심사 대상 선정

※ 부적합시 1회에 한하여 서류 보완

○ 내용 심사 :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표에 의거 서면심사

3) 선정발표

○ 시기 : 2018년 9월 11일(화) 18:00 예정

○ 방법 :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

-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: www.seoulgenderequity.kr > 센터소식 > 공지사항

□ 사업 오리엔테이션

○ 시기 : 2018년 9월 12일(수) 예정

○ 내용 : 사업안내, 회계 지침 안내, 추후 보완서류 안내, 질의응답 등

□ 유의사항

○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○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○ 심사 선정 시 공모신청서 상의 지원 금액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○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 원칙입니다.

○ 지원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교육시 안내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.

□ 문의

- 교육연구팀 02)6258-1025 e-mail : slowpark@sacge.kr 담당자 박은진 (평일 10:00-18:00)

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(18.2.13일)

1 강사로 지급기준

1.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

(: 원)

등 급	대 상(전·현직)		지 급 액		비 고
	공공분야	민간분야	기본1시간	초과시간	
특 별 1 급	대학교 총장(급) ○ 장관(급), 광역지방자치 단체장, 대사 ○ 국회의원	인간문화재(무형문화재보유자) ○ 대기업(상시 근로자수 1,000명 이상) 총수 ○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종교,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	400,000	200,000 (매시간)	
특 별 2 급	○ 언론사 대표 ○ 공공기관·공직유관단체의 장 ○ 단과대학장(급) 교수이상 ○ 차관(급) ○ 광역지방의회의원, 기초자치단체장 ○ 정부투자기관장, 특별행정기관장	○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(급) ○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종교,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	300,000	200,000 (매시간)	
일 반 1 급	○ 대학(교) 교수 ○ 판·검사 ○ 기초지방의회의원 ○ 언론사 임직원 ○ 공공기관·공직유관단체의 임원 ○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○ <u>공공기관·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</u> ○ 4급이상 공무원	○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(급) ○ 컨설턴트(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) ○ 변호사, 전문의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기술사 ○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○ 예술인, 종교인 ○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○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종교,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	230,000	120,000 (매시간)	
일 반 2 급	○ 대학(교) 전임강사 ○ 공공기관·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○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○ 공공기관·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○ 5급이하 공무원	○ 연구기관의 연구원 ○ 일반 컨설턴트 ○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종교,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	120,000	100,000 (매시간)	
일 반 3 급	-	○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	80,000	50,000 (매시간)	
보 조 강 사	○ 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		40,000	40,000 (매시간)	
원 어 강 의	○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% 지급		-	-	
별도기준적용	○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		시간당 1,000,000 이내		

- 「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(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)의 경우,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
- ※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
 - ※ 위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 [별표2]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
 - ※ 「청탁금지법」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
 - ※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「청탁금지법」 과 「같은 법 시행령」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조정된 그 사례에만 적용
 - ※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(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)는 대학(교)의 교수기준 적용
 - ※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